

2021-17(통권 제317호)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ssue Paper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정동덕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university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정동덕

Jung Tong-Tuk

I. 검토 배경

II.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특징

III. 해외 사례와 시사점

IV.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I. Review Background

II.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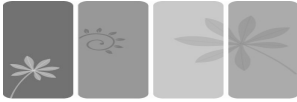
III. Overseas Cases and Implications

IV.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Reference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요약

-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기술협력 수준이 최근 수년간 선진국 대비 하락 추세
 -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에도 공동연구개발 등 혁신 협력 관련 지표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독 연구개발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혁신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가 심화
-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지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
 -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제도는 설립·운영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화 활동 저해,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에 한계, 비현실적인 세제 지원, 유사 지원제도의 산재 등 문제점이 노정
- 해외의 경우, 적극적 기술사업화 활동 추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 사례 증가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기술지주회사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순기능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 운영 등 투자·사업화 촉진 환경 조성 과 거브넨스 고도화 필요
-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활동 촉진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시 자본금 규모 완화를 통한 실질적 투자 역량 제고
 - 자회사 지분보유 의무 조항으로 개선을 통해 투자기회 확대 및 수익성 제고
 -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투자·출연 근거 명확화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참여기관 지분 참여 가능 여부 명확화

-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 발명자에 대한 직접 보상 허용
 - 전담인력 자격요건 및 고용 규모 고려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포괄적(Negative)으로 허용
 - 기술지주회사 지원 근거 및 관리 기준 위임조항 명시적인 내용으로 개선
 - 기술지주회사 변경사항 신고조항 명시적 규정
 -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 지배구조 재편 절차규정 신설
- 세제 혜택 부여
 -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세제 혜택 부여, 현실을 반영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정비 등 거브넌스 고도화
 -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사업화 특별법'으로 통합·제정하는 등 법률 정비
 -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 본 이슈페이퍼는 2021년 NIS정책 콜로키움('21.6.3)의 발제 자료(발제자 :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 및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 제기된 이슈와 개선방안, 현장전문가 의견 등을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Abstract

- Despite the need for open innovation, the level of open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Korea has been declining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n recent years.
 - Indices related to innovation cooperation such as joint R&D show a decreasing trend despite continuous R&D investment expansion, and the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refer independent R&D is increasing.
-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a model that can actively build a virtuous cycle system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y reinvesting profits from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results in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within the university
 - When a technology develop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t is easier to apply the tacit knowledge accumulated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so it is an effective strategy in term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n the meantim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has been exposed to problems such as hindering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limit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unrealistic tax support, and industrial accidents in similar support systems due to regu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 In the case of overseas,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the number of case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anies such as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increases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more in line with the net func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o promote investment and commercialization such a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associations and to improve governance
- As an improvement plan for revitalizing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by easing regu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 Enhancing actual investment capacity by easing the size of capital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 Expans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through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hold shares in subsidiaries
 - Clarification of grounds for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i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by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 Clarification of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participation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hen establishing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 Efficiency operation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 Allow direct compensation to inventors
 - Consideration of qualifications for dedicated manpower and size of employment
 - Allowing the work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o be negative
 - Improvement of technical holding company support basis and management standard delegation clause with explicit content
 - Explicit provisions for reporting changes to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corporate governance reorganization such as spin-off and merger of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 Grant tax benefits
 - Grant tax benefits such as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and amend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o reflect reality
- Advancement of governance such as revision of laws related to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 Reorganization of laws, such as consolidation and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Integration and connec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rganizations within universities

I 검토 배경

- 크로스테크* 급진전 등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기술협력 수준이 최근 수년 간 선진국 대비 하락 추세

* 크로스테크 : FinTech, EdTech 등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제공(한국무역협회, '19)

-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에도 공동연구개발 등 혁신협력 관련 지표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독 연구개발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혁신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가 심화

* 21년 IMD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23위, 과학인프라 순위는 역대 가장 높은 2위이며,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수,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 중이나, 세부지표인 산학간 지식전달은 '21년 25위 수준으로 미흡(IMD, '21)

** '18년의 경우 '11년에 대비하여 공공R&D지출 및 제품·공정혁신은 상승한 반면, 혁신협력이 상당히 약화

| 구분 | 2011 | 2018 | 차이 |
|-------------|--------------|--------------|--------------|
| 공공 R&D 지출 | 119.3 | 132.9 | +13.6 |
| 제품 /공정혁신 | 52.2 | 100.8 | +48.6 |
| 혁신협력 | 179.6 | 134.9 | -44.8 |
| 민관 공동 논문 | 126.1 | 112.7 | -13.4 |

출처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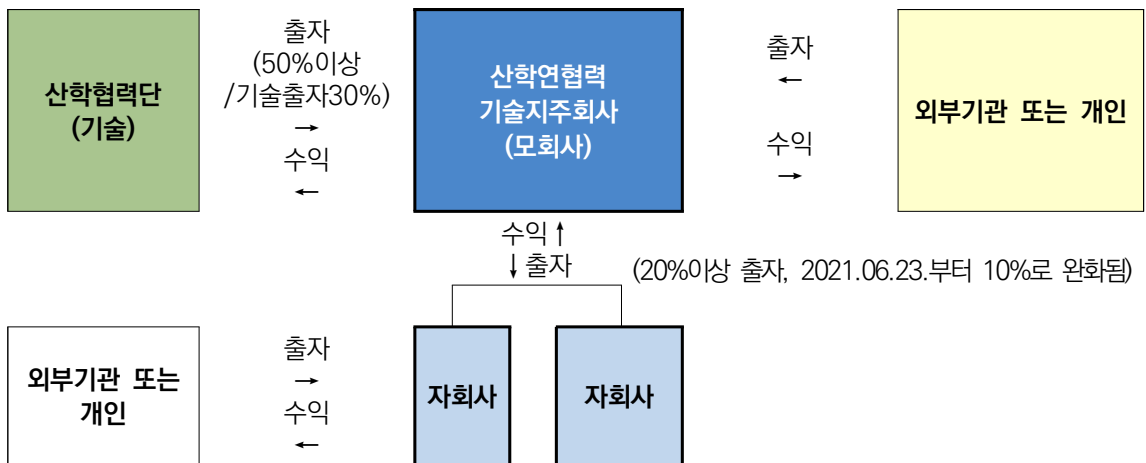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후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학협력 선순환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

-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
-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제도는 설립·운영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화 활동 저해,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에 한계, 비현실적인 세제 지원, 유사 지원제도의 산재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지의 원활한 흐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함

II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특징

■ (정의)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사업지주회사가 아닌 순수지주회사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2조의 8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그림 1] 기술지주회사 운영체제

■ (설립 배경) 대학의 역할 변화와 기술자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및 기존 기술사업화의 단점 및 한계를 극복·보완하는 적극적인 모델이 필요

- 최근 등장한 지식트라이앵글(Knowledge Triangle)(OECD, 2015; 2016) 개념은 혁신, 연구, 교육 활동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 특히 지역혁신에서 대학은 교육, 연구, 혁신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핵심주체

1) 산학협력력 기술지주회사 목적은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지원에 있으며, 경영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설립하는 상법상 지주회사와는 다름

- 특허 분쟁 등의 증가로 기술자산 보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자산의 활용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술자산의 통합적 전략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로 기술지주회사가 부상(특허청, 2008).
- 산학연구, 기술이전, 창업보육, 실험실 창업, 학교기업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유형이 있으나 각 유형별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한계점으로 인해 새로운 방안 모색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기술사업화 모델 필요

| 유형 |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한계점 |
|--------|--|
| 산학연구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제한적 R&D, 연구비 외 수익 한계 |
| 기술이전 | 발명자 기술개발/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의존적, 지속적 기술료 수입 확대의 어려움 |
| 창업보육센터 | 외부기업 중심, 기술적 협력 및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
| 실험실창업 | 교수·연구원 개인창업,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대학 내부 부작용 가능성 존재 |
| 학교기업 | 현장교육(실습)을 통한 인력양성이 주요 목적, 적극적인 수익창출에 한계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능동적인 사업화모델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자료 : KATH(2013), 창조경제 리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경영현황 분석 및 대표사례 발굴 보고서

[그림 2] 기술지주회사제도 배경

■ (특징)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사업화를 통해 전략적 기술사업화와 영리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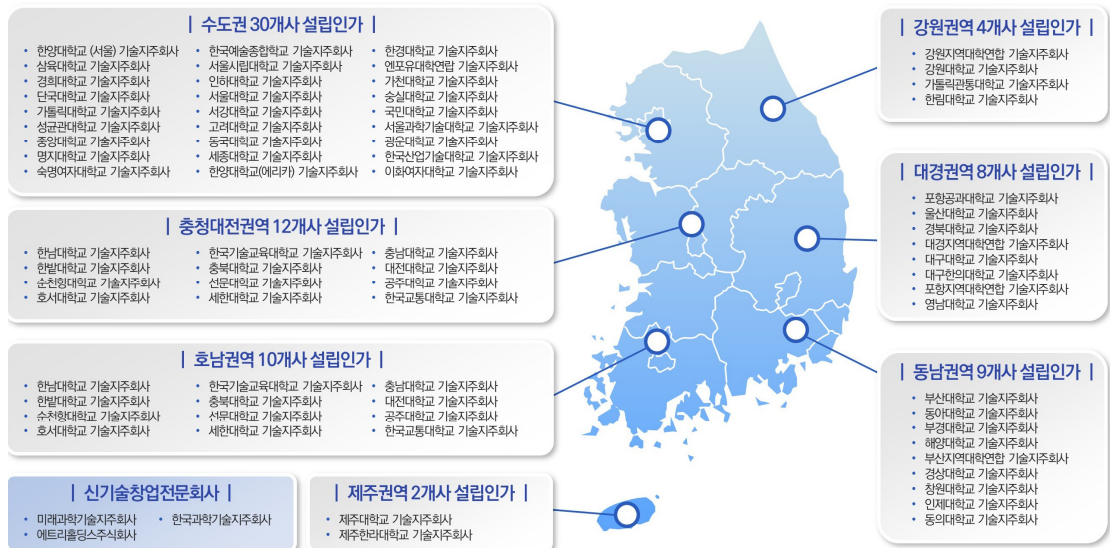
- 공공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대상으로 기술출자방식으로 공공기술사업화를 수행하는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100% 자회사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에 배당으로 귀속되어 기술사업화업무에 재사용 되는 등 기술지주회사는 국가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기술이전 조직의 경우 산단 내 조직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함에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
-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 목적의 독립된 전문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사업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
- 기술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특허청, 2008)
- 대학의 비영리적 속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을 갖게 됨

■ (운영 현황)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78개사가 운영 중

- 102개 대학이 참여, 교육부 설립인가 75개 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한 과학기술지주회사 3개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형태) 등 있음

*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 에트리홀딩스주식회사



[그림 3]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

III

해외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

1)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Oxford University Innovation²⁾

■ 연구중심 대학 소유의 사업화 전문기업

- 1987년 설립 이후 세계 수준의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종합 서비스를 제공
 - Licensing & Ventures Team, Consulting Services Team, Venture Support & Funding Team, Spinout Equity Management Team 등이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 대학 소유 지식재산(IP)를 활용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투자, IP사업화(Licensing & Ventures 팀 중심), 스핀아웃 형성, 혁신 주체들 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
 - Oxentia(Oxford's Global Innovation Consultancy, 기존 Isis Innovation)를 통해 혁신 경영을 위한 전략개발, 사업화 서비스, 엑셀러레이터 및 교육서비스* 등 지원³⁾
 -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교육으로서 사업화 소프트웨어, 디지털 노하우, 기술이전, IP 전략, 가치평가 등
- 대학기술기반 창업 지원을 책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년 15~20개 기업을 스핀아웃(spun-out)하고,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핀아웃 기업의 분야는 바이오,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등이 중심이 되며, 이 외에 그린기술, 연구장비, 연구개발서비스, 의료기기, 엔지니어링, 전자, 디지털 등
- 2011년 이후 Startup Incubator 인큐베이터 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기업 뿐 아니라 외부 벤처도 입주 가능
 - 자문 및 멘토링,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시설, 펀딩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등의 지원 수행
 - * Investor panel 운영하며 펀딩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협력, Oxford Angels Network, Oxford University Innovation Seed Investment, Innovate UK의 그랜트(grant) 연계 등

2) <https://innovation.ox.ac.uk/>3) <https://www.oxentia.com/>

2) 스웨덴 읍살라대학의 UU holding AB⁴⁾

■ 수직계열형 영역별 전문화

- 읍살라 대학의 사업화, 산학협력연구 지원하는 내부 조직 UU Innovation과 연계 활동을 하며, 정부 소유, 대학 운영의 관계를 형성⁵⁾
 -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갖는 UCI(Uppsala Innovation Centre)를 통해 기업 보육
- 기술이전, 투자,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를 개별 특화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이를 통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지주회사 관리 하의 자회사(dotterbolag)^{*}와 포트폴리오 기업(portfolio companies)을 보유하며,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 최소 지분율과 같은 제한이 없음
 - * LUND 대학의 LU Holdings AB의 경우 LU License AB, LU Bio(바이오투자사), Sigrun(소프트웨어), Lunicore(컨설팅서비스) 등의 자회사를 둠⁶⁾
- (역할) 읍살라 대학 구성원(연구, 학생들)에게 혁신 관련 시장, 연구 등의 컨설팅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기술사업화 등 (산업/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들이 공동연구를 원하면, 적정 분야/인력 등을 연결하는 matchmaking 업무
- (구성) 30명의 인력으로 구성(19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의 관련 조직들 규모(7~20명이 일반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
 - 구성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임금 등)도 전반적으로 높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유입하는데 있어 임금 등 처우 관련 장애는 거의 없음
- Uppsala University의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세 개의 축
 - Uppsala University Innovation과 함께 Uppsala University Holdings AB가 있으며, 이것은 자본 중심의 중개 역할을 수행(소규모 자체 펀딩 & 외부 투자처 네트워크)
 - Uppsala Innovation Center(UCI)는 주요 혁신활동을 위한 인프라 기능을 수행

4) 손수정 외(2019)

5) 이성상(2017)

6) 이성상(2017)

- Uppsala University가 읍살라산업단지의 중심으로서 경제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데 있어서는 혁신주체들간의 연계·협력 모델이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작용
 - * STUNS 재단은 1983년에 설립되어, 위의 모든 조직을 아우르는 우산 역할 수행
- 조인트 재단으로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읍살라 지역의 많은 공공조직 임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음

- (인큐베이션) 아이디어, 연구 관련 문제,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를 매주 정규 미팅을 통해 진행
 - UUInovation, UUholdings, UCI 등이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 건물 내에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
 - 인큐베이션 경로 :
 - ① 시장 수요자들을 확인하고, 매칭하는 등의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시장 관점의 이해에서 시작(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 전단계에서 1시간 상담을 진행)
 - ② build 과정으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3개월 진행)하고, 혁신 잠재력을 키우기 과정
 - ③ 엑셀러레이터 과정으로 비즈니스 코치를 매칭(Master4Research)하고, 주당 10시간, 2년~3년간 진행
 - * 멘토는 산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며, 1:1 매칭으로 이루어짐



자료: Malin Graffner Nordberg (UU Innovation 매니저 발표자료(2019.11.8.))

[그림 4] Uppsala University의 혁신 주체들의 연계

3) 중국 칭화대학의 Tsinghua Holdings⁷⁾

■ Tsinghua University 기술자산 기반 부가가치 창출 플랫폼 기능

- 칭화대학의 기술 성과를 산업계(시장)로 이전하기 위해 2003년(2001년 시범운영) 설립(자본금 \$395.13million), 2018년 기준 중국 수익 Top 500 기업 중 137위
- 2001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주회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장 중심의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유입하고, 독립적인 경영을 수행하도록 유인
- 혁신 전환 플랫폼 기능, 혁신 투자 플랫폼, 국유 자본 관리 플랫폼 기능 수행
- 대학 기술 기반 모든 투자활동을 수행하며, Tsing Capital(벤처캐피탈)을 두고, 그린기술에 주로 투자
- 주력 분야는 통합 회로, 환경보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혁신서비스, 기술금융, 문화산업, 온라인 교육 등

〈표 1〉 Tsinghua Holdings 주요 기능

| 구분 | 개요 |
|---------|---|
| 인큐베이터 | 전문 인력, 산업 경험 등의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전략수립 및 보육 지원 |
| 하이테크 육성 | IT,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중점 육성 지원 |
| 혁신서비스 | 대학 기술이전사무소와 함께 관련 혁신재원의 연결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지원, Tsinghua University Science Park(TusPark) 중심의 통합서비스, 커뮤니티센터, InnoWay 조성 |
| 기술금융 | 모펀드 조성(50개 이상의 펀드 투자, GP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Tsinghua Holdings Sanlian Venture Capital 설립 |

- (대표 자회사) Tongfang Co., Ltd., Tsinghua Unigroup, TusHoldings Co., Ltd., and Chengzhi Shareholding Co., Ltd.; as well as subsidiaries including Tsinghua Holdings Habitat Development Group, Tsinghua University Press, CapitalBio Corporation, Tsinghua Holdings Group Finance Co., Ltd., Tsinghua Holdings Nuclear, and MOOC-EN Education 등
- Tsinghua Unigroup은 팸리스반도체회사로서, Tsinghua Holdings가 51%를 소유하고 49%는 Beijing Jiankun Investment Group 보유

7) http://en.thholding.com.cn/2016-07/23/c_53617.htm

2. 시사점

■ 대학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술사업화 활동 추진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 사례 증가

- 수직계열형 지주회사(스웨덴), 투자형 기술이전 관련 사업회사 또는 특정연구성과 활용사업 지원회사(일본), 통합형 기술사업화 지원 회사(영국), 관리형 지주회사(중국) 등 국가별로 특색 있는 형태로 발전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사업화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기술사업화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 최소 지분을 제한과 같은 규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최소 지분율과 같은 제한이 없어 전략적 판단이나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
- 기술료로 주식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의 처분도 상대적으로 수월
- 지주회사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의 순기능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필요

■ 대학의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 운영 등 투자·사업화 촉진

- 기술지주회사의 성장 전략으로써 ‘파이낸싱 갭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조합 조성 및 운영’을 설계함에 있어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주요한 선행 사례가 될 수 있음
-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대학이 직접 초기 투자자금(seed fund)을 운용할 필요

IV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활동 촉진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시 자본금 규모 완화를 통한 실질적 투자 역량 제고

■ 현황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30% 이상을 현물(기술)로 구성해야 하며(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2항), 설립 이후에도 현물 자본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산학협력법 제36조의8 제1항)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전체 자본의 30% 이상을 현물(기술)로 구성할 경우 투자를 위한 현금자본규모와 무관하게 설립 인가 요건 충족
 - ☞ 현금자본 증자 등의 사유로 현물(기술)자본 비율이 30%미만이 될 경우 기술지주회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 취소 가능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편입을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투자 여력 필수
 - ☞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평균금액은 12..7억원('18.3.기준, 중기부)으로, 기술지주회사 평균 현금출자액 4.61억에 비해 약 2.8배 수준

■ 한계

-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현금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외부기관의 현금투자 등 기술지주회사 자본 확충 기회가 있어도 늘어나는 현금자본에 상응하는 현물(기술)출자가 어려워 투자유치 기회 상실
 - ☞ '17.12. 기준 법인설립이 완료된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 시 현금출자 금액은 평균 4.61억 수준이며, 현금자본규모 3억원 이내의 기술지주회사는 58개 중 29개(약 50%)
 - ☞ 현금투자에 대응한 현물출자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이나 투자계획과 무관한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 포트폴리오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현장의 목소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 민간벤처가 기술지주회사에게 투자 의향을 밝혀도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비율 30%를 맞추기 위한 기술을 동원할 수 없어 투자를 거절해야만 했던 경험 존재
- 일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현금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목록과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기술을 출자하여 억지로 현금 출자비율을 맞추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의 30% 이상 현물(기술) 출자·유지 조건을 설립 시 출자만 요구하고, 유지 요건은 완화(10%)
- 기술창업 투자 촉진이라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원활한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최저현금자본 기준(2억원 이상) 도입
-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포트폴리오 및 재무제표(자본비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2) 자회사 지분보유 의무 조항으로 개선을 통해 투자기회 확대 및 수익성 제고

■ 현황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출자 시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함 (산학협력법 제36조의4 제4항)
 - ☞ 지분양도·합병·증자 등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로 10% 지분을 회복하거나 자회사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필요
 - *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각호)
 - ☞ 지분회복·청산하지 않을 시 '자회사 외 주식 취득' 사유로 산학협력단에게 기술지주회사 출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제48조)

■ 한계

- 자회사 지분 보유 부담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추가 투자여력 부족을 야기하고 자회사에 대한 외부투자 저해 요소로 작용
 - ☞ 자회사 투자기관(VC, 기업 등)은 기술지주회사에게 10% 이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문제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실험실 창업으로 전환

[현장의 목소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자회사가 성장을 할 경우 최소 3번 이상의 외부투자(증자)가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는 증자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해 초기에 확보한 지분율을 유지하기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자회사 지분매각 시한이 도래하여,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민간 VC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데, 상대방도 지주회가가 주식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서 기술지주회사가 가격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

[○○대학교 사례]
○○대 기술지주회사는 ○○대 A교수의 신약기술을 기반으로 △△제약으로부터 8억원의 투자제의를 받았으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창업시 반드시 20%이상(2021.6.23.부터 10%)을 기술지주회사가 확보해야만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제약이 자회사 설립을 포기하고 기술지주회사없이 A교수와 △△제약이 공동으로 창업

■ 개선방안

- 지분확보 실패 시 자회사 주식매각이 의무화되어 우량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 포기 등 기술지주회사의 성과창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10%)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같이 의무 보유주식 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완화 필요

3)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투자·출연 근거 명확화

■ 현황

- 산학협력단 회계 지출 항목 중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출은 출자만이 명시적으로 규정 (법 제32조 제6호)하고 출연 형태의 지출에 대한 규정 미비
 - ☞ 현행 규정 상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출연금 지원은 시행령*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한계

-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대학마다 해석·집행을 달리하는 등 혼선 발생

[현장의 목소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게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기술지주회사 출자·출연에 대한 법해석을 두고 산단-지주회사간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것

■ 개선방안

- 지출항목으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명시

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참여기관 지분 참여 가능 여부 명확화

■ 현황

- 산학협력단·산업교육기관은 단독 또는 타 산학협력단·학교법인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법 제36조의2 제1항)

■ 한계

- 설립 주체가 아닌 기관(참여기관)의 설립단계 참여 가능 여부가 모호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추가적인 행정비용 소모, 즉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학 외 기관(지자체·VC·민간기업 등)의 지분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혼란
 - ☞ 참여기관 지분참여 가능규정 미비로 선(先)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後) 참여기관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시간이 소요
 - ※ 설립 이후 출자액·출자비율 변경 시 기술지주회사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합기술지주회사 사례]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설립시 설립단계에서 테크노파크법인을 통해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참여기관의 지분참여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우선 설립주체(대학)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완료후 지자체(TP)가 투자를 실행

■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설립주체 지분(50% 초과)규정을 정비하여 그 외 참여기관*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 기업(공기업·민간기업·금융기관 등), 지자체(또는 지자체 TP), VC 등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는 아니나 지분참여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기관

2.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1) 발명자에 대한 직접 보상 허용 (법률)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 현황

- 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 보상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법 제35조 제1항)
 - ☞ 발명자 보상 지급을 포함한 대학 지식재산권의 취득·사용·관리 권한이 산학협력단에게만 부여 (법 제27조 제1항)
 - ※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특허)를 보유한 주체이므로, 기술의 출자·창업에 따른 배당형태의 보상을 기술지주회사가 발명자에게 직접 실시하기 곤란

■ 한계

- 발명자는 자회사 수익이 보상으로 회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우량 자회사의 실적이 희석*되어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기피
 - *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이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각 자회사의 실적이 일괄합산되어, 우량 자회사의 수익이 타 자회사의 손실과 상계됨

예시) 기술지주회사에 자회사 A(영업이익+10억), 자회사 B(영업이익 -4억), 자회사 C(영업이익 -6억)가 있을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은 0원(+10-4-6)이되어, 발명자보상 미 실시 발생

[현장의 목소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팀장)
교수들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창업의 경우 발명자보상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규모가 기술지주회사내 타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고 직접창업(연구실창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 자회사가 창출한 수익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기술지주회사가 발명자 보상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기술지주회사의 직접 보상 시 자회사 실적별로 개별 보상이 가능(기존 산학협력단 중심의 보상체계는 자회사의 운영실적을 합산하여 보상 실시)[전담인력의 강화]

2) 기술지주회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자격요건 및 고용 규모 고려

■ 현황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으로 전용공간과 함께 1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법 제3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2항)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으로 전문인력의 자격능력이나 경력요건 없이 상근직으로 채용·운영할 것만을 명시

■ 한계

- 상근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고용된 전문인력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관련 전문업무수행 곤란
 - ☞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회사,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은 관련 법률에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

■ 개선방안

- 1인 이상 상근 전문인력은 기술투자·자회사 컨설팅 등 기술지주회사 실질적 운영·실적창출에 필요한 인력 기준으로는 미흡하므로 전담인력 요건 강화
 - ☞ 창업투자회사(2인), 사업화전문회사(5인) 등 기관은 복수의 전담인력 고용을 명시

3)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포괄적(Negative)으로 허용

■ 현황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경영관리, 기술지주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열거식(Positive)으로 규정(법 제36조2 제4항)

■ 한계

- 열거주의 방식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투자환경 변화에 맞춘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영역 확장 제동

■ 개선방안

- 규제보다는 기술사업화 목적의 업무 수행을 포괄적으로 허용

4) 기술지주회사 지원 근거 및 관리 기준 위임조항 명시적인 내용으로 개선

■ 현황

- 정부·지자체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보조) 가능 (법 제36조의2 제5호)
 - ☞ 기술지주회사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 기준·절차 등 지원 집행을 위한 시행령·조례 위임 조항 부재

■ 한계

- 위임조항 부재로 기술지주회사 지원범위 등 지원(보조금)의 목적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기준(규정)의 법적 근거 미약
 - ☞ '대학 기술경영촉진(TMC)사업(과기부)' 관리규정 경우 지원근거법령(산학협력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이 없는 자율협약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

■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지원(보조)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과 준수사항을 규율하는 관리규정의 법제화가 어려워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적인 내용으로 개선

5) 기술지주회사 변경사항 신고조항 명시적 규정

■ 현황

- 기술지주회사 정관·출자액(비율)·설립요건, 자회사 설립현황(출자비율 포함) 변경사실이 있을 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 기술지주회사는 신고사항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한계

-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없고, 신고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기술지주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
 - * 규정은 '설립인가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설립주체(대학 등) 지분, 현물자본 비율의 미미한 변동사항까지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개선방안

-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기간(30일 이내) 미준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조항의 실효성 부족하므로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정리
 - ☞ 신고규정에 대한 각 기술지주회사의 해석에 따라 신고 항목·내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정확한 현황관리 및 기술지주회사 업무혼선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6)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 지배구조 재편 절차규정 신설

■ 현황

- 기술지주회사 설립 이후 대학의 이탈(회사분할을 통한 별도 기술지주회사 설립 포함) 및 추가 참여 시 권리관계 절차는 상법을 준용
 - * 법 제36조의10(상법 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

■ 한계

- 기술지주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절차규정이 없어 기술사업화 환경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지배구조 재편이 곤란
 - *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회사(신고제)와 달리 설립 시 교육부 장관 인가 필요

■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설립기관 변동* 시 신고·재인가 규정이 없어 설립 이후 대학의 이탈·신규진입 상황에 대한 행정처리 방식 모호에 대한 개선 필요
 - * 미참여 대학의 출자 또는 참여 대학의 지분 매각(이탈) 등 설립 주체 변경

<표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안)

| 현 행 | 산학협력법 개정(안) |
|---|---|
| 기술지주회사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 기준·절차 등 지원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조례 등 위임 조항 부재 | (법률§21 신설) 기술지주회사 지원(보조) 기준 위임근거 조항 신설 |
| 산학협력단의 지출항목으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만 명시 * 출연은 국연사 규정에 따름 | (법률§32)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출연 근거 명시(출자 → 출자·출연) |
| 산학협력단에만 지식재산권의 취득·사용·관리 권한 부여 | (법률§35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직접 발명자 보상 허용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초과, 현물자본 비율 30% 초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시행령 제42조) | (법률§36조의2, 시행령§42) 기술지주회사 인가요건 개선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30% 초과를 현물(기술)로 출자하고, 설립 이후에도 현물자본 비율 30% 초과유지 | (법률§36조의2, 법률§36조의8) 기술지주회사 인가최소 요건 완화(인가 이후 현물출자 30%유지 → 10%)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학 외 기관(지자체·VC·민간기업 등)의 지분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 혼란 | (법률§36조의2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 등 설립주체의 지분규정(50%) 외에 외부기관 투자 관련 정비 |
|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 후 자회사 설립 등 투자활동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인가 취소 등 조치 | (법률§36조의8신설, 시행령§43②③) 장기간 운영 실적 미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
| 교육부고시*를 법률로 상향 기술지주회사의 정관·설립요건 등 변경사실이 있을 시 교육부장관에게 30일 이내 통보 *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설립요건, 출자액 및 출자율 등 변경 | (법률§36조의10 ① 신설) 기술지주회사 신고사항 정비 및 신고 의무조항 실효성 확보 * 미이행 시 제재 등 |
|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시 별도의 변경인가 절차 규정이 없어 분할·합병 행위가 사실 상 금지 | (법률§36의11 신설) 기술지주회사 내 권리관계 변동(분할, 합병 등)에 대한 재인가 허용 |

〈표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시행령 개정(안)

| 현행 |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
|---|---|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설립자본의 30% 초과를 현물(기술)로 구성하면 인가 요건 충족 | (시행령§42)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최소 현금자본(5억원) 기준 도입 |
| 상근인력 1인 이상 확보 규정 외 인력의 전문성 기준 없음 | (시행령§42·시행규칙신설) 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 자격기준(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마련 |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경영관리, 기술지주회사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를 열거식(Positive)으로 규정 | (시행령§43)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외의 업무는 정관으로 규정 |
| 기술지주회사 정관·출자액(비율)·설립요건, 자회사 설립 현황 변경 사실 있을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시행령§50조) 기술지주회사 필수 변경 신고사항 정비 및 신고의무조항 근거 마련 |
| 매년 실태조사 등 정보 수집·관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임의 협조 ※ 기술지주회사의 비공개로 정보수집 곤란, 조사항목의 법적 근거 필요 | (시행령§50조)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

3. 세제상 이슈 및 개선방안

■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세제 혜택이 없음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증여세법 규정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술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법개정 등의 노력 필요

● 법인세에 대한 과제

-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이익금의 배당을 받게 될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통하여 법인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
- 또한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중소기업창업투자전문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어 법인세 세제 혜택이 있음
- 그러나 공공기술사업화업무수행과 관련 수입이 기술사업화 선순환 투자가 되는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세제 혜택 없이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주식양도 차익 등 전반적인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음

〈표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

● 부가가치세

-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자회사 투자, 기술이전, 기타컨설팅 업무로 구분되며 기술이전과 기타 컨설팅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자회사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등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즉, 기술지주회사의 주 업무가 무엇이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및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로서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음.
 - 현재 한국과학기술지주(주)와 미래과학기술지주(주)의 경우 투자업무가 주된 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고 있으며 최근 일부 대학기술지주회사도 관련 이슈로 세무서와 논의 중에 있음
- 현재와 같이 기술이전은 산학협력단, 기술출자는 기술지주회사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향후 기술지주회사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술이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 매출세 과세 현황

| 수익활동 | | 매출세 과세여부 | 관련 매입세액 공제 |
|------------|-----------------------|----------|--|
| 산단/ TLO | 지주회사 현물출자, 기술이전 | 과세 | 매출세액 과세이므로 특허취득비용 등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 |
| | R&D 등 고유목적 | 면세 | 매출세액 면세이므로 R&D 관련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
| 기술지 주회사 | 지분투자 | 면세 | 매출세액 면세이므로 관련 자산구입 및 비용지출 관련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
| | 기술현물출자 (투자) | 과세 | 매출세액 과세이므로 산단으로 기술현물출자 등으로 매입한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 |
| | 컨설팅업무 | 과세 | 기술지주회사 컨설팅 관련 매입 부가세 환급가능 |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48조에 의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과 기타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0%,2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과세되고 있음.
- 그러나 상속증여법 제48조 2항 2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제제외 단서조항(시행령 제37조 6항)은, “산학협력단이 산촉법에 따라 ①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며, ③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명시
- 현금출자액이 중요하고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희석으로 산학협력단의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우수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하여 자회사 요건인 지분율이 20% 이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표 6〉 상속증여법 시행령 제37조 6항 3호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1.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자회사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회사 및 투자조합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4.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정비 등 거브넌스 고도화

■ 현재 기술지주회사와 설립 목적 및 대상이 유사한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유사 제도가 산재

- 학교기업,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첨단기술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로 동일하고, 대상 역시 동일
-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은 <표7>과 같이 법률과 부처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의 구체성 및 규정이 모호하고 부족

<표 7>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비교

| | 학교기업 | 연구소기업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공공(연)첨단 기술지주회사 |
|-------|--|-------------------------|--------------------------|--|-----------------------------|
| 설립 목적 | 대학현장교육과 기술이전·사업화 | 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 대학 등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추진 | 대학보유 기술의 투자 및 사업화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투자·사업화 |
| 운영 모델 | 현장교육연구병행 사업활동 | 특구내 기관의 자본출자 확대로 수익출자 | 대학등이 회사지분 직접 소유로 수익창출 | 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창출 | 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창출 |
| 도입 시기 | 2003.5 | 2005.7 (대학 2009.12) | 2007.1 | 2007.8 | 2010.4 |
| 설립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
| 주관 부처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산업통상자원부 |
| 조직 형태 | 학교소속부서 (비영리기업) | 외부기업조직 (지주회사) | 외부기업조직 (지주회사) | 외부기업조직 (지주회사) | 외부기업조직 (지주회사) |
| 설립 주체 | 산업교육기관 및 산학협력단(단독) | 대학/연구기관 및 소속회사(단독/공동)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단독) |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독/공동) | 공공연구기관(산학 단체외)(단독/공동) |
| 법인 설립 | 사업자 등록 | 과기부 등록 | 중기부 등록 | 교육부 인가 | 산업부 등록 |

■ 유사법 통합,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 통폐합 등 거브넌스 고도화 필요

-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사업화 특별법’으로 통합·제정하는 등 법률의 정비가 필요
- 산학협력단, TLO,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기술사업화 유관조직의 통합 및 효율적 연계를 통한 대학 기술사업화전문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

〈표 9〉 기술지주회사관련 거브넌스 개편(안)


| 현행 | | | 개선(안) | |
|----------|-------|-------------|-------------|--|
| 구분 | 소관부처 | 주요 업무 | 소관부처 | 주요 업무 |
| 설립 인가 | 교육부 | 설립인가 | 교육부 | 대학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총괄 |
| | 과기정통부 | 산학협력단 설립지원 | | |
| 운영 지원 | 산업부 | 기술지주회사 운영지원 | 과기정통부 | 기술지주회사 운영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 사업 총괄 |
| 연계 지원 | - | - | 산업부, 중기부 | 연계·협력(자회사 성장단계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유관사업 |

참 고 문 헌

- 이성상(2017), 대학의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 TLO와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vpl. 12. No.4, pp.197-212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3), 창조경제 리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경영현황 분석 및 대표사례 발굴 보고서
- 손수정·임채윤·홍성민·김지선·최치호·박종복(2019),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특허청(2008), 선진 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과 특허정책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19. 10.11), 한·일 R&d R&D 지원세제 비교
- 한국무역협회(2019),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현황 및 시사점
-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21. 6
- OECD(2015), “Scoping paper for CSTP/TIP project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knowledge triangle”, DSTI/STP(2015)6.
- OECD(2016), “OECD High-Level Event on the Knowledge Triangle: Enhancing the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Innovation”, Paris: OECD.
- <https://innovation.ox.ac.uk/>
- <https://www.oxentia.com/>
- http://en.thholding.com.cn/2016-07/23/c_53617.htm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 발간호 | 제목 | 저자 |
|-----------------------|--|--------------------------------------|
| 2021-16 (통권 제316호) |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 이재훈, 박일주(KISTEP) |
| 2021-15 (통권 제315호) |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D.N.A와 BIG3- | 김진용 외(KISTEP) |
| 2021-14 (통권 제314호) | R&D인프라의 실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유형정, 김선재, 권정은, 이승필(KISTEP) |
| 2021-13 (통권 제313호) |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인식 차이 분석 | 김지홍, 주혜정(KISTEP) |
| 2021-12 (통권 제312호) |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엄익천(KISTEP), 황원식(전북대학교) |
| 2021-11 (통권 제311호) |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 오세홍, 안지혜, 유지은 (KISTEP) |
| 2021-10 (통권 제310호) | 기술개발지원 지역 R&D의 효율성 개선 방향 제언 | 박석종(KISTEP), 염성찬 |
| 2021-09 (통권 제309호) |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 홍미영, 김주원(KISTEP) |
| 2021-08 (통권 제308호) |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정의진 외(KISTEP) |
| 2021-07 (통권 제307호) |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 허현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이장재(KISTEP) |
| 2021-06 (통권 제306호)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 윤수진(KISTEP) |
| 2021-05 (통권 제305호) |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 KISTEP 차이나포럼 |
| 2021-04 (통권 제304호) |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안승구, 이선명(KISTEP) 이광훈(강원대학교) |
| 2021-03 (통권 제303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과제 | 변순천 외(KISTEP) |
| 2021-02 (통권 제302호) |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 박노연(KISTEP) |



필자 소개

▶ 정동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
- 043-750-2333 / ttjung@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21-17 (통권 제317호)

|| 발행일 || 2021년 12월 1일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 043-750-2300 / F.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T. 02-2269-4783)
